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9월 3일, 홍익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11. 9)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1. 11. 30) 상정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2. 4. 14)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3. 9. 21) 상정·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3. 9. 21)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홍익표 의원)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관련 내용을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 원자력이용시설 고장 관련 내용이나 통보 방식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 등이 발생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장애방어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명시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원자력이용시설 고장, 방사선장해 등의 내용이나 통보 방식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안위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입법취지로 봄.

- 특히, 원자력 시설의 사고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전조치 등 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여짐.

-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추가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와 관련하여 시행예정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 제10조제2항에서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이 발생하면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수준보다 강화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라는 취지로 보여짐.

이와 관련하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동법 시행일('22.6.9)에 맞춰 다음과 같이 시행령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의 신속한 통

보 등 공개 절차의 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원자력이
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에 대한 공
개의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법 률	시 행 령 (안)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애방어조치 보 고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 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 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 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u>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u> 하여야 한다.	제00조(원자력이용시설 장애방어조치 보고 관련 공개 절차)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 방어조치에 관한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u>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u> 및 법 제13조 에 따라 설치한 <u>원자력안전협의회</u> 에 보 고받은 내용을 이용가능한 통신수단을 통 해 <u>신속히 통보</u> 하여야 한다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 9.

참고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당
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432호,
2020.7.28.)과 병합 심사를 하여 유사한 내용을 논의하였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령을 마련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장 박성중)

현행법령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의 신속한 통보 등 공개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되, 원안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에 대한 공개의무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수정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9.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고 있고, 시행령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의 신속한 통보 등 공개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에 대한 공개의무는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원자력안전정보에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려는 정의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다목 삭제).
- 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현행 규정으로 환원함(안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삭제).

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에 대한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라.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안 제9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목 중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를 “주민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주민에게”로 한다.

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안 부칙 “2022년 6월 9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 -----.	제2조(정의) ① ----- ----- ----- -----.
1. “원자력안전정 보”란 다음 각 목 의 정보를 말한 다. 가.·나. (생략)	1. ----- ----- ----- -.	1. ----- ----- -----
<u><신설></u>	다. 「원자력안 전법」 제92 조에 따라 원 자력안전위원 회에 보고되 는 원자력이 용시설의 고 장 등에 관한 정보	<u><삭제></u>
다.·라. (생략)	라.·마. (현행 다목 및 라목 과 같음)	다.·라. (개정안 라목 및 마목 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	2. ~ 4. (개정안과

	<u>관계기관등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 ----- ----- -----.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애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u>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u>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애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현행과 같음)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애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u>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u>

<u>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부 칙 이 법은 <u>2022년 6월 9일부터</u>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애방어 조치 보고의 공개) <u>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애방어 조치 보고의 공개) ① <u>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② <u>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